



직장에서의 ICE 대응

고용주와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

이 지침은 직장에서의 이민 단속과 관련하여 고용주와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정보와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뉴욕주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권리를 가집니다. 뉴욕주의 노동법은 근로자의 이민 신분이나 노동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요구법, 차별 금지법, 그리고 보복 금지법이 포함됩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에서는 노동자의 이민 신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복에 대한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뉴욕주의 노동법 위반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 신고하기

ICE 불시 단속(raid)이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소속 기관입니다. ICE 불시 단속은 수사의 일환으로, ICE 요원이 사전 통보 없이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ICE 요원의 제복에 “police(경찰)” 또는 “federal agent(연방 요원)”라고 써 있을 수 있지만, 경찰관인 것은 아닙니다. 간혹 지역 경찰이나 다른 법집행관이 ICE 요원과 함께 불시 단속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ICE 불시 단속에 대비할 수 있습니까?

고용주와 근로자는 본 문서 및 기타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토하여, ICE 불시 단속 발생 시 취할 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ICE가 우리 직장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ICE는 허가 또는 영장 없이 귀하의 사업장 내 공용 공간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 공용공간이란 일반 대중의 출입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장소입니다.
- » 예를 들어, 공용 공간에는 슈퍼마켓, 소매점, 음식점의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구역뿐 아니라 건물 로비 등이 포함됩니다.

ICE는 사범영장 또는 고용주의 허가 없이는 사업장의 비공개 구역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 » 비공개 구역이란 대중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직원 전용 구역입니다.
- » 이 보호는 공장이나 농장의 비공개 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전형적인 비공개 구역에는 개인 사무실, 휴게실, 창고, 직원 전용(**back-of-house**) 주방 등이 포함됩니다.
- » 해당 공간이 비공개 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로는 “**Private(비공개)**” 표지, 잠긴 문, 방문객 또는 일반 대중이 해당 공간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 등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IC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네. 고용주는 ICE 요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고용주는 그들의 외모나 식별 가능한 특징을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ICE에 사범영장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까?

네. 고용주는 ICE 요원에게 **사범영장**이 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 » 사범 영장이란 법원이 발부하고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 연방 지방법원 서기가 사범영장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 » ICE 요원에게 사범영장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요원들이 사범영장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의 비공개 구역에 출입을 허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ICE 요원이 행정영장(사범영장이 아님)을 가지고 비공개 구역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행정영장은 ICE에게 고용주의 동의 없이 비공개 구역에 들어올 법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ICE 요원이 행정영장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비공개 구역에 출입을 허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범영장과 행정영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범영장(Judicial warrant)

사범 영장이란 법원이 발부하고 판사가 또는 경우에 따라 연방 지방법원 서기가 서명한 영장을 말합니다.

사범영장의 견본은 **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행정영장(Administrative warrant):

행정영장은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 또는 법무부의 직인이 찍혀 있고 이민 집행관이 서명합니다. 행정영장은 법원에서 발부된 것이 아니며, 판사가 서명하지 않습니다.

행정영장의 견본은 **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ICE의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까?

아니요. 근로자든 고용주든 ICE가 묻는 질문에 반드시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ICE에 어떤 서류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인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CE가 특정 인물을 찾는 행정영장을 고용주에게 제시하는 경우, 고용주는 다음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 » 특정 직원이 그날 근무 중인지 여부를 알려주는 것
- » 행정영장에 기재된 직원을 ICE 요원에게 데려가는 것

만약 ICE가 허락 또는 사법영장 없이 개인이나 비공개 구역을 수색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가능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리를 떠나도 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신체

수색을 당한다면, “나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라면, “나는 수색이나 비공개 구역 출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E가 수색을 계속한다면, 신체적으로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해당 공무원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야기한 대상, 당신이 한 말, 그들의 반응 등 발생한 일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종이에 적거나 휴대전화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ICE가 사법영장 없이 사업장 운영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요원들의 이름과 직함,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I-9 감사(audit)란 무엇입니까?

I-9 감사는 사업장 측에서 근로자의 신원과 취업 자격을 확인했는지를 ICE가 점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 고용주는 근로자 채용 후 3년 또는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년 중 더 늦은 시점까지 I-9 양식을 보관해야 합니다.
- » 근로자가 한 번 I-9 양식을 작성하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 고용주는 근로자의 신분증 또는 취업 자격 증명 서류의 사본을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저는 고용주입니다. ICE가 제 사업장에서 I-9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ICE는 I-9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법영장이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ICE가 I-9 양식을 열람하려면, 고용주에게 최소 3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 » ICE가 3일 사전 통지 요건을 포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고용주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합리적인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이 지침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법적 자문을 원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영장 견본

미국 지방 법원

관할

_____의 _____지구

다음의 수색에 관한 건)
(수색 대상인 재산을 간략히 설명 또는)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 사건 번호

수색 및 압수 영장

수신: 권한 있는 모든 법집행관

연방 법집행관 또는 정부 소속 변호사가, _____의 _____지구에
소재하는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수색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색할 사람을 특정하거나 재산을 설명하고 그 소재지를 기재할 것)

선서 진술서 또는 녹취된 증언에 의하여, 상기 인물 또는 재산을 수색 및 압수할 상당한 근거가 존재함을
인정하며, 그러한 수색을 통하여 다음이 발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할 사람을 특정 또는 재산을 기재할 것)

본 영장을 늦어도 _____까지 집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14일을 초과할 수 없음)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주간에 집행할 것 상당한 사유가 인정된 바, 주야간 어느 때나 시간에 관계 없이 집행할 수 있음

아래에서 지연 통지가 승인되지 않는 한, 영장 사본 및 압수 재산 인수증을 재산의 소유자 또는 재산이 위치한
부지의 소유자에게 제공하거나, 영장 사본 및 인수증을 재산이 압수된 장소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본 영장의 집행관, 또는 영장 집행 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은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고, 즉시 본
영장과 목록을 _____에 반환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 치안 판사)

18 U.S.C. § 3103a(b)에 따라, 즉시 통지가 18 U.S.C. § 2705에 열거된 불리한 결과(재판 지연 제외)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본 영장의 집행관에게 수색 또는 압수 대상자 또는 대상 부지 소유자에 대한 통지 지연을 승인합니다.
(해당란에 표시할 것)

일 동안 (최대 30 일) 정당한 사유에 따라 이후 특정일 _____까지

발부 날짜 및 시간: _____
_____관사 서명

도시, 주: _____
_____이름 및 직책을 정자로 기입

반환

사건 번호:

영장 집행 날짜 및 시간:

영장 및 함께 남긴 목록 사본:

목록 작성 시 입회인:

압수품 목록 및 체포된 사람의 이름:

확인서

본인은 위증죄 처벌 원칙 하에, 이 압수품 목록이 정확하고 원본 영장과 함께 지정된 관사에게 반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날짜: _____

집행관 서명

이름 및 직함을 정자로 기입

**행정영장/
이민 서류
(DHS Forms I-247, I-200, I-205)
견본**

국토안보부
이민 구금 요청 - 조치 통지서

대상자 ID:
사건 번호:

과일
번호:

수신: (기관명 및 직함 - 또는 후속 법집행기관)

발신: (국토안보부 사무소 주소)

해당 외국인에 대한 구금 기간은 최대 48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유지할 것

외국인 이름: _____

생년월일: _____ 국적: _____ 성별: _____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현재 귀 기관의 구금 하에 있는 상기 인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 해당 인물이 미국에서 추방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인물은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표시):
- ☐ 중범죄 전과가 있거나 중범죄로 기소된 적이 있음
 - ☐ 3건 이상의 경범죄 전과가 있음
 - ☐ 폭력, 위협 또는 폭행, 성적 학대 또는 착취, 알코올 또는 규제 약물 복용 운전, 사고 현장에서의 불법 도주, 총기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무기의 불법 소지 또는 사용, 규제 약물의 배포 또는 밀매, 기타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범죄와 관련하여 경범죄 전과가 있거나 경범죄로 기소된 적이 있음
 - ☐ 8 U.S.C. § 1325에 따른 불법 입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
 - ☐ 이전 추방 또는 송환 후 불법적으로 재입국함
 - ☐ 고의로 이민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이민 담당관 또는 이민 판사가 판정함
 - ☐ 국가안보, 국경안보 또는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함
 - ☐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_____
- ☐ 추방 절차를 개시하고 출두 통지서(Notice to Appear) 또는 기타 기소 문서를 송달하였습니다. 기소 문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_____(날짜)에 송달되었습니다.
- ☐ 추방 절차를 위한 체포영장을 송달하였습니다. 체포영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_____(날짜)에 송달되었습니다.
- ☐ 해당 인물에 대한 미국 추방 명령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치는 해당 인물의 구금 등급, 작업, 거실 배정 또는 기타 사안에 관한 결정을 내릴 귀 기관의 재량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DHS는 구금 요청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유로 형사 혐의를 취하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귀 기관에 요청합니다.

- ☐ DHS가 대상자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원래 석방되어야 할 시점 이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대상자의 구금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요청은 연방 규정 8 C.F.R. § 287.7에 근거합니다. 이민 구금 요청의 목적상, 귀 기관은 대상자를 48시간 초과 구금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상자 석방 예정 시점보다 가능한 한 조기에 DHS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시간 중에는 _____, 업무 시간 외 또는 긴급 시에는 _____로 연락 주십시오. 위 번호로 DHS 당국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Vermont, Burlington에 있는 ICE Law Enforcement Support Center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802) 872-6020.
- ☐ 해당 구금 요청 사본을 대상자에게 제공하십시오.
- ☐ 석방 최소 30일 전 또는 가능한 한 조기에 본 사무소에 석방 일시를 통보 바랍니다.
- ☐ 또한 대상자의 사망, 입원 또는 다른 시설로의 이송 시 본 사무소에 통보 바랍니다.
- ☐ 본 구금 요청은 대상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 ☐ 본 사무소가 _____(날짜)에 발부한 이전의 구금 요청을 취소하십시오.

(이민 담당관 성명 및 직위)

(이민 담당관 서명)

현재 본 통지서의 대상자를 구금 중인 법집행기관이 작성할 사항:

아래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동봉된 봉투를 사용하거나 사본을 팩스 _____로 DHS에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본을 자체 보관하여 귀 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상자를 48시간 초과 구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방 구속/수감 번호: _____ 최신 형사 기소/유죄 판결: _____(날짜) 예상 석방일: _____(날짜)
최종 형사 기소/유죄 판결: _____

안내: 본 구금 요청의 대상자가 본 기관의 구금 하에 들어오면,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인물이 범죄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거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포함하여 검찰 기소 또는 기타 법집행 목적으로 미국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ICE 법집행 지원센터 (802) 872-6020에 연락 바랍니다.

(공무원 성명 및 직위)

(공무원 서명)

구금자에 대한 통지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귀하에 대해 이민 구금 요청을 발부하였습니다. 이민 구금 요청이란 귀하가 구금에서 석방된 후 DHS에서 귀하의 신병을 인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DHS가 법집행기관에 알리는 통지입니다. DHS는 현재 귀하를 구금하고 있는 법집행기관에 대하여, 귀하가 형사 기소나 유죄판결에 근거하여 주 또는 지방 법집행 당국으로부터 석방되는 시점 이후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구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DHS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추가 48시간 이내에 귀하의 신병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구금 관리자(현재 귀하를 구금 중인 법집행기관 또는 기타 단체)에게 주 또는 지방 구금으로부터의 석방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본 구금 요청이나 DHS 활동과 관련된 민권 또는 시민적 자유 침해에 관한 이익이 있는 경우, ICE 합동 접수센터(ICE Joint Intake Center) 1-877-2INTAKE (877-246-8253)으로 연락 바랍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 또는 범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 ICE 법집행 지원센터(ICE Law Enforcement Support Center) 무료 전화 (855) 448-690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NOTIFICACIÓN A LA PERSONA DETENIDA

El Departamento de Seguridad Nacional (DHS) de EE. UU. ha emitido una orden de detención migratoria en su contra. Mediante esta orden, se notifica a los organismos policiales que el DHS pretende arrestarlo cuando usted cumpla su reclusión actual. El DHS ha solicitado que el organismo policial local o estatal a cargo de su actual detención lo mantenga en custodia por un período no mayor a 48 horas (excluyendo sábados, domingos y días festivos) tras el cese de su reclusión penal. **Si el DHS no procede con su arresto migratorio durante este período adicional de 48 horas, excluyendo los fines de semana o días festivos, usted debe comunicarse con la autoridad estatal o local que lo tiene detenido** (el organismo policial u otra entidad a cargo de su custodia actual) para obtener mayores detalles sobre el cese de su reclusión. **Si tiene alguna queja que se relacione con esta orden de detención o con posibles infracciones a los derechos o libertades civiles en conexión con las actividades del DHS, comuníquese con el Joint Intake Center (Centro de Admisión) del ICE (Servicio de Inmigración y Control de Aduanas) llamando al 1-877-2INTAKE (877-246-8253).** Si usted cree que es ciudadano de los Estados Unidos o que ha sido víctima de un delito, infórmele al DHS llamando al Centro de Apoyo a los Organismos Policiales (Law Enforcement Support Center) del ICE, teléfono (855) 448-6903 (llamada gratuita).

Avis au détenu

Le département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a émis, à votre rencontre, un ordre d'incarcération pour des raisons d'immigration. Un ordre d'incarcération pour des raisons d'immigration est un avis du DHS informant les agences des forces de l'ordre que le DHS a l'intention de vous détenir après la date normale de votre remise en liberté. Le DHS a requis que l'agence des forces de l'ordre, qui vous détient actuellement, vous garde en détention pour une période maximum de 48 heures (excluant les samedis, dimanches et jours fériés) au-delà de la période à la fin de laquelle vous auriez été remis en liberté par les autorités policières de l'État ou locales en fonction des inculpations ou condamnations pénales à votre rencontre. **Si le DHS ne vous détient pas durant cette période supplémentaire de 48 heures, sans compter les fins de semaines et les jours fériés, vous devez contacter votre gardien** (l'agence des forces de l'ordre qui vous détient actuellement) pour vous renseigner à propos de votre libération par l'État ou l'autorité locale. **Si vous avez une plainte à formuler au sujet de cet ordre d'incarcération ou en rapport avec des violations de vos droits civils liées à des activités du DHS, veuillez contacter le centre commun d'admissions du Service de l'Immigration et des Douanes [ICE -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Joint Intake Center] au 1-877-2INTAKE (877-246-8253).** Si vous croyez être un citoyen des États-Unis ou la victime d'un crime, veuillez en aviser le DHS en appelant le centre d'assistance des forces de l'ordre de l'ICE [ICE Law Enforcement Support Center] au numéro gratuit (855) 448-6903.

AVISO AO DETENTO

O Departamento de Segurança Nacional (DHS) emitiu uma ordem de custódia imigratória em seu nome. Este documento é um aviso enviado às agências de imposição da lei de que o DHS pretende assumir a custódia da sua pessoa, caso seja liberado. O DHS pediu que a agência de imposição da lei encarregada da sua atual detenção mantenha-o sob custódia durante, no máximo, 48 horas (excluindo-se sábados, domingos e feriados) após o período em que seria liberado pelas autoridades estaduais ou municipais de imposição da lei, de acordo com as respectivas acusações e penas criminais. **Se o DHS não assumir a sua custódia durante essas 48 horas adicionais, excluindo-se os fins de semana e feriados, você deverá entrar em contato com o seu custodiante** (a agência de imposição da lei ou qualquer outra entidade que esteja detendo-o no momento) para obter informações sobre sua liberação da custódia estadual ou municipal. **Caso você tenha alguma reclamação a fazer sobre esta ordem de custódia imigratória ou relacionada a violações dos seus direitos ou liberdades civis decorrente das atividades do DHS, entre em contato com o Centro de Entrada Conjunta da Agência de Controle de Imigração e Alfândega (ICE) pelo telefone 1-877-246-8253.** Se você acreditar que é um cidadão dos EUA ou está sendo vítima de um crime, informe o DHS ligando para o Centro de Apoio à Imposição da Lei do ICE pelo telefone de ligação gratuita (855) 448-6903.

THÔNG BÁO CHO NGƯỜI BỊ GIAM GIỮ

Bộ Quốc Phòng (DHS) đã có lệnh giam giữ quý vị vì lý do di trú. Lệnh giam giữ vì lý do di trú là thông báo của DHS cho các cơ quan thi hành luật pháp là DHS có ý định tạm giữ quý vị sau khi quý vị được thả. DHS đã yêu cầu cơ quan thi hành luật pháp hiện đang giữ quý vị phải tiếp tục tạm giữ quý vị trong không quá 48 giờ đồng hồ (không kể thứ Bảy, Chủ nhật, và các ngày nghỉ lễ) ngoài thời gian mà lẽ ra quý vị sẽ được cơ quan thi hành luật pháp của tiểu bang hoặc địa phương thả ra dựa trên các bản án và tội hình sự của quý vị. **Nếu DHS không tạm giam quý vị trong thời gian 48 giờ bổ sung đó, không tính các ngày cuối tuần hoặc ngày lễ, quý vị nên liên lạc với bên giam giữ quý vị** (cơ quan thi hành luật pháp hoặc tổ chức khác hiện đang giam giữ quý vị) để hỏi về việc cơ quan địa phương hoặc liên bang thả quý vị ra. **Nếu quý vị có khiếu nại về lệnh giam giữ này hoặc liên quan tới các trường hợp vi phạm dân quyền hoặc tự do công dân liên quan tới các hoạt động của DHS, vui lòng liên lạc với ICE Joint Intake Center tại số 1-877-2INTAKE (877-246-8253). Nếu quý vị tin rằng quý vị là công dân Hoa Kỳ hoặc nạn nhân tội phạm, vui lòng báo cho DHS biết bằng cách gọi ICE Law Enforcement Support Center tại số điện thoại miễn phí (855) 448-6903.**

对被拘留者的通告

美国国土安全部 (DHS) 已发出对你的移民监禁令。移民监禁令是美国国土安全部用来通告执法当局, 表示美国国土安全部意图在你可能从当前的拘留被释放以后继续拘留你的通知单。美国国土安全部已经向当前拘留你的执法当局要求, 根据对你的刑事起诉或判罪的基础, 在本当由州或地方执法当局释放你时, 继续拘留你, 为不超过 48 小时 (星期六、星期天和假日除外)。如果美国国土安全部未在不计周末或假日的额外 48 小时期限内将你拘留, 你应该联系你的监管单位 (现在拘留你的执法当局或其他单位), 询问关于你从州或地方执法单位被释放的事宜。如果你对于这项拘留或关于美国国土安全部的行动所涉及的违反民权或公民自由权有任何投诉, 请联系美国移民及海关执法局联合接纳中心 (ICE Joint Intake Center), 电话号码是 1-877-2INTAKE (877-246-8253)。如果你相信你是美国公民或犯罪被害人, 请联系美国移民及海关执法局的执法支援中心 (ICE Law Enforcement Support Center), 告知美国国土安全部。该执法支援中心的免费电话号码是 (855) 448-6903。

파일 번호 _____

날짜: _____

**수신: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섹션 236 및 287 및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타이틀 8 파트 287에 따라
이민법 위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가진 모든 이민 공무원**

본인은 _____이(가) 미국으로부터 추방 대상이라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은 다음에 근거합니다.

- ☐ 대상자에 대한 추방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기소문서의 작성 및 집행
- ☐ 대상자에 대한 진행 중인 추방절차의 서류
- ☐ 추후 유예심사 후 입국 허가를 입증하지 못한
- ☐ 대상자의 신원을 생체정보를 통해 확인하고, 연방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대상자가 이민 신분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민법에 따라 추방 대상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경우, 및/또는
- ☐ 대상자가 이민 공무원에게 자발적으로 한 진술 및/또는 그 밖의 신뢰할만한 증거로서,
대상자가 이민 신분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민법에
따라 추방 대상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경우

이민 및 국적법에 의거한 추방 절차를 위해 상기 명시된 외국인을 체포하고, 신병을 확보할 것을
명령합니다.

(승인된 이민 공무원 서명)

(승인된 이민 공무원 이름 및 직함 정자로 기입)

송달 증명서

본인은 외국인 체포 영장을 _____에서 _____에게
(장소) (외국인 이름)

_____에 송달하였고, 본 고지의 내용을 _____언어로
(송달 날짜) (언어)

대상자에게 낭독했습니다.

공무원 성명 및 서명

통역인 성명 또는 번호 (해당되는 경우)

국토안보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추방 영장

파일 번호: _____

날짜: _____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모든 이민 공무원

(외국인의 성명)

_____에서 _____에 미국에 입국한 상기 외국인은
(입국 지점) (입국 날짜)

다음의 최종 명령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추방 대상입니다.

- ☐ 입국 거부(exclusion), 추방(deportation) 또는 강제 출국(removal)
- ☐ 절차에서 이민판사가 내린 명령 지정 공무원이 내린 명령
- ☐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의 명령
- ☐ 미국 연방지방법원 또는 연방치안법원 판사의 명령

그리고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의 다음 조항에 근거합니다.

본인은 아래 서명한 미국 공무원으로서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과 그 지시에 의거하여, 상기 명시된 외국인을 구금하고 법에 따라 미국 밖으로 추방할 것을 명합니다. 관련 비용은 다음의 부담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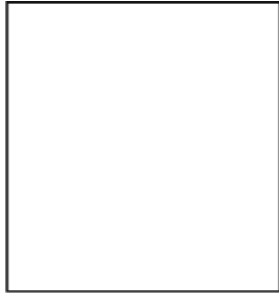
(이민 공무원 서명)

(이민 공무원 직함)

(날짜 및 사무소 소재지)

영장을 집행하는 이민 담당관이 작성할 사항: 추방 대상 외국인의 성명:

추방 지점, 날짜 및 방식: _____



추방 대상 외국인의
사진



추방 대상 외국인의
오른쪽 검지 지문

(지문 채취를 받는 외국인의 서명)

(지문 채취를 하는 이민 담당관의 서명 및 직함)

출국 목격자: _____

(이민 담당관의 서명 및 직함)

실제 출국을 목격하지 않은 경우, 출국 확인의 출처 또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자가 추방(self-removal)인 경우, 8 CFR 241.7에 따라 여기에 표시하십시오.

출국 확인자: _____

(이민 담당관의 서명 및 직함)